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00. 11. .
제 출 자	구 미 시 장

1. 개정 이유

-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현재 운용 중에 있는 조례 중 일부를 적법성과 현실성 있게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노외주차장 표지 설치하는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함(안제6조)
-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1】제4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적용토록 함(안 제18조)
- 주차장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삭제함(안 제20조)
- 조례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과징금의 가감 또는 감경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별표3】을 개정

3. 참고 사항

-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 “설치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 제4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자.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8조(지체부자유자전용주차장설치기준) ① 영 제6조 제1항의 【별표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수(주차대수 10대 미만은 제외)를 다음 각호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또는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크기는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며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제18조(장애인전용주차장설치기준)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 제4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제20조(과태료 처분)①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삭제>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현행			개정안		
위반행위	위반 정도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 한때 (법 6조제1항)	위반시	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 한 때	법 제6조 제1항	50
	2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6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 을 거절한 때 (법 제17조제2항)	위반시	4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 을 거절한 때	법제17조 제2항	50
	2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제3항)	위반시	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3조 제3항	50
	2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제1항)	위반시	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제25조 제1항	50
	2회이상 위반시	60			

- ◆ 비 고 : 위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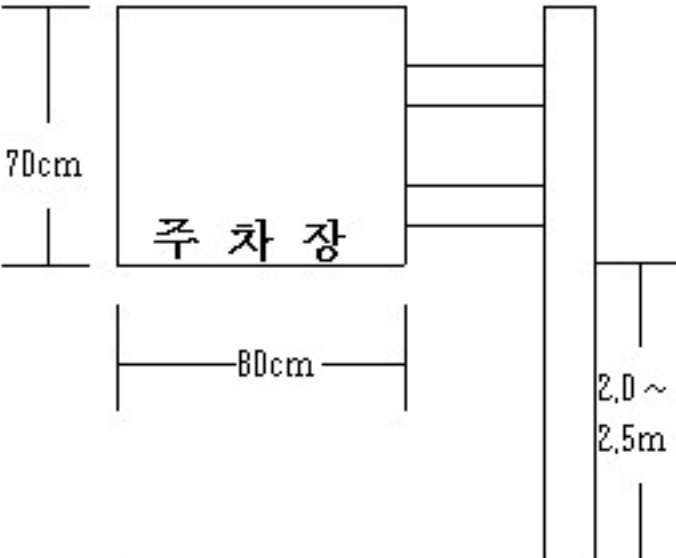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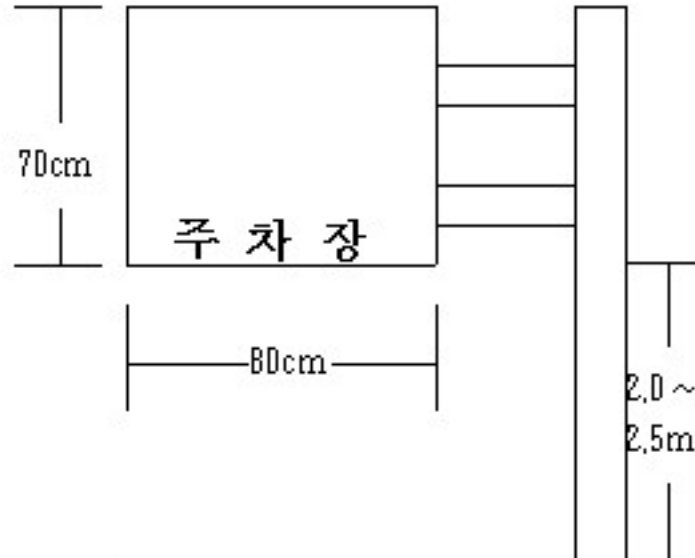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법 제30조제2항 관련)

(단위 :만원)

현행			계정안
위반행위별	구분	과태료	<삭제>
1.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법 제17조제2항)	1회	40	
	2회	50	
2.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의 7제2항)	1회	40	
	2회	50	
3.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의 10제2항)	1회	40	
	2회	50	
4.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법 제25조제1항)		50	

【별지 제2호 서식】

현행	개정안
노외주차장 표지  = 비 고 =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28cm×세로25cm) - 문자 (가로 17cm×세로 17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 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주차장 표지  = 비 고 =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28cm×세로 25cm) - 문자 (가로 17cm×세로 17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 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지 체 부 자 유 자 전 용 표 시

현행	개정안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 × 세로 32cm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 ~ 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삭 제>